

마스카라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61519 (2026.06.04.)
- 쟁 점 사 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멕시코
- 최종 원산지: 미국



II 사실관계

용도	• 눈 화장용		
재료		미국	• 벌크 상태의 마스크라 원료
		멕시코	• 플라스틱 용기 • 브러시가 달린 뚜껑 • 라벨 • 포장재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미국  마스크라 원료 생산 → Manufacturing ▾  멕시코  STEP 1 마스크라 원료 수입 STEP 2 플라스틱 용기 및 뚜껑 생산 STEP 3 용기에 원료 충전 및 밀봉 STEP 4 라벨 부착 및 포장 → Export ▾  멕시코 최종 수출		
상세 공정		미국	• 미국 및 외국산 원료를 혼합하고 유화하여 벌크 상태의 마스크라 원료 생산
		멕시코	• 소형 플라스틱 용기 및 브러시가 달린 뚜껑 생산 • 용기에 마스크라 원료 충전 및 밀봉 • 라벨 부착 및 소매용 포장

III 판정 결과

《CBP의 판정》

- 미국에서 여러 원료를 혼합하고 유화하여 마스크라 원료를 만드는 과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반면, 멕시코에서 수행되는 충전, 조립 및 포장 작업은 수입될 시점의 마스크라의 명칭, 특성 및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

Ⅳ 시사점

- ⊙ CBP는 화장품류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충전, 성형, 포장 등을 통해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완성하는 공정보다 원료의 혼합·유화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의 조성과 본질적 특성을 형성하는 공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 이에 따라 벌크 원료 상태에서 이미 화장품의 성질과 최종 용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용기나 도포 장치를 결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료 제조국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함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아이라이너 펜슬
사례번호	HQ H302820 (2019.09.04.)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이탈리아] - 비휘발성 왁스, 오일, 향산화제, 토너 등을 적정 온도에서 혼합하여 분말 형태의 원료 생산 • [중국] - 펜슬 블랭크 생산 - 이탈리아산 원료 가열 후 펜슬 블랭크에 충전 - 최종 포장
판정 결과	• 이탈리아산 원료는 중국에서 공정을 통해 소비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형되긴 하나, 원료에 대한 어떠한 추가 성분도 투입되지 않음 • 이탈리아산 아이라이너 원료는 이미 완성된 화장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용도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특성과 용도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